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어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조의3)

「어선법」 개정안('24.12.)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 시행('25.12.21.)을 대비하여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

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 신설(안 제16조)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변경, 취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40일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야 사전 심의 요청중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관리대장의 등록사항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7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8.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필요한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 발급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어선의 개발에 필요한 어선의 성능·안전 향상 연구 및 건조 공법의 개발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3]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기준

1. 어선건조·개조업의 시설기준

시설명	세부 기준	비고
작업시설	실내작업시설의 경우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된 바닥 구조를 갖추고, 직사광선·눈·비·바람 등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건조업에 한함
보관시설	직사광선·눈·비·바람 등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강화플라스틱(FRP)재 어선건조·개조업의 장비기준

장비명		세부기준	비고
형틀(Mould)		형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틀 외부는 보강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건조업에 한함
유리섬유 재단장비	재단대	사용하는 매트와 로빙을 재단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재단대를 최소 1대 이상 구비해야 한다.	건조업에 한함
	커팅기	수동커팅기는 유리섬유의 재단이 가능한 가위 또는 칼 등으로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최소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자동커팅기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날접촉 예방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구비한 것으로 최소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적층장비	함침용 롤러	곡면 등 형틀에 함침이 용이한 함침용 롤러는 작업자 수 이상으로 구비하여 충분한 수의 롤러가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탈포용 롤러	곡면 등 형틀에 탈포가 용이한 탈포용 롤러는 작업자 수 이상으로 구비하여 충분한 수의 롤러가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가공장비	전동공구 (절단기, 절삭기 및 샌딩기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절단기, 절삭기, 샌딩기 등 전동공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KC)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나라의 인증(CE, UL, PSE, CCC)을 받은 제품으로 최소 1대 이상 구비해야 한다.	

3. 강재 및 알루미늄합금재 어선건조·개조업의 장비기준

장비명		세부기준	비고
가공장비	전동공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절단기, 절삭기, 샌딩기 등	

	(절단기, 절삭기 및 샌딩기 등)	전동공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KC)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나라의 인증(CE, UL, PSE, CCC)을 받은 제품으로, 최소 1대 이상 구비해야 한다.	
절단장비	기계톱	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조·개조규정에서 정하는 재료를 자를 수 있는 기계톱을 구비해야 한다.	
	가스절단기	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조·개조 규정에서 정하는 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가스절단기를 구비해야 한다.	
조립장비	용접기	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조·개조 규정에서 정하는 용접의 종류 및 방법에 맞는 용접기를 구비해야 한다.	
	리벳(등근 버섯모양의 굽은 못) 용접기	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조·개조규정에서 정하는 리벳용접 방법에 따른 용접기를 구비해야 한다.	

4. 목재 어선 건조·개조업의 장비기준

장비명		세부기준	비고
가공장비	전동공구 (절단기, 절삭기 및 샌딩기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절단기, 절삭기, 샌딩기 등 전동공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KC)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나라의 인증(CE, UL, PSE, CCC)을 받은 제품으로 최소 1대 이상 구비해야 한다.	

5. 어선 건조·개조업의 인력기준

가. 건조·개조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조선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박의 건조·개조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2)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선박의 건조·개조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3)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4) 선박의 건조·개조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조의3(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관리대장의 등록사항을 말한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신 설>	
<신 설>	
<신 설>	

1. ~ 4의2. (생략)

<신설>

5.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

<신설>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신설>

<신설>

1. ~ 4. (생략)

4. ~ 7의2. (현행 제1호부터 제4호의2까지와 같음)

8.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삭제>

9.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에 필요한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 발급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어선의 개발에 필요한 어선의 성능·안전 향상 연구 및 건조 공법의 개발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4. ~ 7. (현행 제1호부터 제4호

④ (생략)	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51